

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5. 5. 10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5월 3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5월 6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5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 -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5. 5. 10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김연수)

- 가. 제안이유
「지방세법」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용어 및 감면비율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,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활성화를 도모하며,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, 주택분 재산세 및 건물분재산세와 토지분재산세로 변경됨에 따라 세목과 맞지 않은 내용을 보완함 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7조, 안 제7조의3, 안 제9조, 안 제10조, 안 제11조, 안 제12조, 안 제13조, 안 제15조, 안 제17조, 안 제19조)
- 다. 서울특별시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에 부합하도록 감면률을 조정함(안 제7조의2)
- 라. 실질적인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건설임대(60㎡초과 149㎡이하) 및 매입임대(60㎡초과 85㎡이하)로 확대함 (안 제8조)

마.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적용 범조 정비 (안 제13조)

바. 조례의 유효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(안 부칙 제2조)

4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5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6. 討 論 要 旨 : 없 음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8. 少數 意見의 要旨 : 없 음

9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